

각종 위원회 및 강사실비변상규정

제 정 2007. 03. 13

개 정 2010. 01. 06

개 정 2012. 11.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남문화재단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각종 강연회의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와 외부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일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성남문화재단의 위원, 강사와 전문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일비) ①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출석, 강사의 강의, 전문가의 공청회 등의 참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비의 지급 시 “별표 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원고료) ①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 강사 또는 전문가가 각종 위원회 및 성남문화재단에 원고제출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 지급 시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발표사례비) ①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 강사 또는 전문가가 성남문화재단의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토론회 등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발표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발표사례비 지급 시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1.8.>

제5조(실비변상의 예외) 대표이사는 실비변상을 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비변상 지급액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2.1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11.8.>

실비변상기준

○ 직급 계상 기준

소 속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타
대 학	부 교 수 이 상	전임강사 이상	박 사 과 정 재 학 생 이 상	석사과정 이하 재 학생 또는 보 조 원
기 업 · 기 관 · 단 체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15년 이상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국 공 립 기 관 및 지 자 체	3급 이상 직원	4 ~ 5급 직원	8급 이상 직원	9급 이하 직원
문 화 예 술 인	문 화 예 술 분 야 1 5 년 이 상 경 력 소 유 자	문 화 예 술 분 야 1 0 년 이 상 경 력 소 유 자	문 화 예 술 분 야 5 년 이 상 경 력 소 유 자	문 화 예 술 분 야 5 년 미 만 경 력 소 유 자

○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비 고
원 고 료	원고지 1매	8,000원 이하	200자
강 사 료 (1일 4시간 기준)	★기관장, 저명인사	500,000원 이하	
	책임급	400,000원 이하	
	선임급	300,000원 이하	
	원급 이하	200,000원 이하	
위 원 수 당 (1일 2시간 기준)	성남문화재단 이사, 인사위원회 위원	200,000원 이상	
	책임급	200,000원 이하	
	선임급	150,000원 이하	
	원급 이하	100,000원 이하	
발 표 사 례 비 (1일 2시간 기준)	책임급	250,000원 이하	
	선임급	200,000원 이하	
	원급이하	150,000원 이하	

※ 비고 : 1일 기준시간 초과 시 별도 50,000원을 계상해서 지급할 수 있다.

